

전주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420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5.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C는 2015. 6. 11. D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 받고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12. 9. E 주식회사를 거쳐 2018. 10. 26.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와 각 양도통지가 모두 이루어졌다.
-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729253호로 양수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0,789,705원 및 그 중 9,995,600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2023. 11. 1. 기준 원리금 합계 27,601,238원 및 그 중 원금 9,995,6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3. 11. 2.부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

- 1) 피고와 C는 2023. 5. 10. 사망한 모(母)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1/4 지분씩(나머지 자녀들인 G와 H가 각 1/4 지분씩) 공동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이 199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이 2023. 5. 18. 이에 관하여 전부 피고가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다만 등기부에는 망인의 사망일자인 2023. 5. 10.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26. 피고 앞으로 2023. 5.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3. 5. 18.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I은행과 J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으로 원금만 75,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1/4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 C의 형제로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하였고, C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C 상속지분인 1/4은 C의 책임재산이 아닌 피고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서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앞에서 판단한 악의 추정과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인바,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별지